

유럽,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에 대한 입법화에 한발 짝 다가서다

유 럽연합의 소프트웨어 특허제도에 대한 논란이 있는 변화들이 법률문제 및 유럽역내 시장에 관한 유럽의회위원회(이하 Juri라 함)의 투표에 의해서 입법화에 한발 짝 더 다가서고 있다.

Juri는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가 취급되어 온 방식의 모호성과 EU 회원국간의 소프트웨어 관련 개별특허를 해석하는 방식에서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컴퓨터관련발명의 특허성에 관한 제안된 지침에 관한 일련의 수정안을 승인해 주는 투표를 하였다.

유럽위원회(EC)는 특허 가능한 발명을 가진 회사들이 시스템이 모호하고 유럽회원국간의 불일치로 인하여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를 현재 추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컴퓨터 관련 발명보호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제안된 지침서는 소규모 개발업자들이,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큰 경쟁업자들로부터 시시한 소송을 계속해서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미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하는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자 및 과학자들에 의해서 심하게 비판을 받아왔다.

그 제안서는 이미 다른 두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Juri 투표는 올 가을에 유럽의회에서 제안서가 통과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최종 승인전에 보다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만약 EU 지침대로 승인이 된다면 모든 EU 회원국들은 국내단계에서의 입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출처 news.zdnet.co.uk

미 하원, 협동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 발의

미 하원의 Lamar Smith 의원(공화당)은 2003년 협동연구 및 기술 향상법(CREATE : Cooperative Research and Technology Enhancement Act of 2003)(법안번호 H.R. 2391)을 제출하였다. 동 법안은 미국 대학, 공공 연구소 그리고 사기업간의 협동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를 촉진하고 있다.

“생명공학, 의약 그리고 나노기술 관련 기업, 대학 및 공공 분야의 공동연구자들은 이제 막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개선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만약 의회가 혁신을 촉진하고, 연구자들간의 의사교환을 조장하고, 특허출원의 승인을 능률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암, 심장병, 치매 그리고 관절염에 대한 새로운 치료방법과 같은 것이 좀더 빨리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고 스미스 의원은 말하였다.

The CREATE Act는 Oddzon Products, Inc., v. Just Toys, Inc., et. al 사건에 대한 연방 순회항소법원(CAFC)의 판결에 대응하여 작성된 것이다. Oddzon 사건에서, 법원은 여러 기관을 대표하는 연구팀의 연구원들간에 교환된 비밀 정보(소위 “비밀 선행기술”)은 특허 출원을 무효화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즉, 파생된 선행기술은 자명성(obviousness)의 증거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미스 의원의 법안은 이러한 장벽을 없애고, 여러 기관들이 연관이 있어 있더라도 특허출원은 승인될 수 있음을 허용한 것이다.

동 법안은 특허법 제102조(f)와 103조(c), 즉, 미 특허법 제102조는 특허요건 중 신규성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실(Conditions for

patentability; novelty and loss of right to patent)에 대한 조항, 제103조는 특허 요건 중 진보성(Conditions for patentability; non-obvious subject matter)에 관한 조항으로서 동 법안은 제102조(f)하에 가능한 선행기술이 제103조 하의 자명성의 증거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¹⁾

동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미 하원 법사위원회의 법원, 인터넷 및 지식재산권 소위원회에서 개최되었다. 미 하원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표한 사람들은 총 4명으로, 예일대학교 기술이전소 소장, 특허 변호사 2명, Georgetown대학 법대 교수 1명으로서 동 법안에 모두 찬성하면서, 약간의 수정의견을 내기도 하였다.²⁾

스미스 의원은 많은 연구소들이 종종 대학 및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허 승인 절차에 관한 불확실성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은 생명구조 기술을 추구함에 있어서 연구소와 그 공동연구자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다.

The CREATE 법안의 목적 : 여러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팀 연구자들"간의 의사교환을 촉진하고, 특허가능한 발명을 이끌어낸 연구에 자발적으로 협력한 동료 발명자를 괴롭히기 위하여 발견 과정을 이용하는 자(즉, 공동 연구자가 개발한 이전의 발명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교환한 비밀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한 특허 획득을 방해하는 자)들을 단념시키고,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며, 새로운 발명의 상업적 이용가능성을 가속화하는 것.

출처 하원 홈페이지

미국의학협회,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하다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는 의사들이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동협회는 연구를 위해 복제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한 일이며, 인간을 복제하는 것을 윤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함으로써, 동 분야의 과학연구자에게도 덕적인 방패 막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 같은 미국의학 협회의 입장은 과학과 윤리에 대해 의사들에게 지침을 제공한 것으로서, 모든 종류의 인간 복제를 반대하는 부시행정부와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백악관은 하원에서 올해 제출된 모든 종류의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2개의 법안에 대해서 승인 한 바 있다. 한편, 과학자들은 2년 전 부시대통령이 부과한 제한 때문에 줄기세포연구가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학협회의 승인은 당뇨병이나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질병 연구를 위해 줄기세포의 원천으로 사용하기 위한 초기 태아의 생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낙태 반대론자들 중 일부는 태아가 인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관련 연구를 반대하고 있다. 미국의학협회는 국립과학아카데미등과 같은 관련 단체들에 비해서 생명윤리라는 관점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지켜왔다. 따라서 과학계에서는 동 협회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승인이 인간복제에 관련한 입법에 영향을 미칠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한편, 동 분야의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뉴욕주의 한 발생 생물학자는 심장이식의 소스로서 사용될 수 있는 사람-침팬지 혼혈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다.

출처 The Guardian

1) 동 법안에 대한 자세한 개정 내용은 http://www.ipo.org/2003_New/hr2391.pdf에서 볼 수 있다.

2)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http://www.house.gov/judiciary/courts0610031htm>에서 볼 수 있다.

일본 「지적재산전략」, 각 부처간의 대립으로 난항 중

일 본의 지적재산전략 지침으로 된 추진계획 수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특허나 저작권의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규제완화나 새로운 예산 조치, 인원의 재배치가 필요한 항목이 많아 각 부처의 이해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지적재산전략본부 발표할 안이 5월의 원안보다도 대폭적으로 후퇴할 형세이다.

추진 계획은 지적 재산의 보호, 창출, 활용에 관하여 금후 3년간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내용을 포함시키고, 7월에 정식 결정될 예정이다.

원안에는 해적판을 단속하는 국제 지적 재산 거래 위원회의 신설, 지적 재산의 관리·유동화에 신탁제도 활용, 특허심사 신속화법의 제정, 지적 재산 고등법원의 설치 등이 특별히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동 본부관계자에 의하면 「어느 것이나 관계 부처로부터의 반대가 강하고 실현은 위태롭다」고 한다.

지적 재산 추진 계획 골자 중 난항 중인 검토항목

- 보호 분야는

- 특허 심사 신속화법의 제정
- 지적 재산 고등법원의 설치
- 기술계 법관의 도입
- 침해사건에 대응한 국제지적재산거래위원회 설치

- 활용 분야

- 지적 재산의 관리·유동화에 신탁 제도의 활용

국제지적재산거래위원회의 신설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경제산업성과 재무성이다. 미국의 국제 무역 위원회(ITC)를 모델로 해서, 모방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전문 조직으로서, 내각 관방의 본부 사무국이 제안했지만, 경제산업성 간부는 「세관의 강화로 충분하다. 원래 일본은 ITC의 덤핑 인정이 일방적이라고 비판해 왔는데, 그것을 모델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는다」고 한다.

본부관계자에 의하면 신설될 경우 경산성 산하의 특허청으로부터 인원이 대폭적으로 할애된다는 것도 배경이 된다. 재무성은 재정난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세관의 권한축소에의 경계감도 있다」고 한다.

한편 경산성은 기업이나 대학에 부속한 기술이 전기관(TLO)에도 지적 재산에 한해 신탁면허를 주고, 관련 기업 등이 각각 관리하고 있는 특허 등을 효율적으로 일원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신탁은행의 반발이 예상되고, 신탁사업의 규제완화를 검토할 금융감독청도 원칙 자유화에 신중하다.

특허심사신속화법은 심사청구로부터 특허가 인정되기까지의 기간을 현재의 평균 2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할 것을 목표로 해서 시작됐다. 그렇지만 특허청간부는 「심사원의 증원이 없다면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하고, 수치목표를 포함시키는 것은 곤란한 형편이다.

지적 재산권의 쟁송을 전문적으로 취급할 지적 재산고등법원의 설치나 지적 재산권의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계 법관·변호사의 도입·충실에 대해서는 법무성에 의하면 「사법제도 개혁 전체 가운데서 논의되는 것이 당연하며, 조급하게 결론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서 추진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연간의 특허건수에서 보아도 독립된 고등법원을 설

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의견이 강하다.

이러한 이해 대립 속에서 동 본부 민간위원인 久保利英明 변호사는 5월 하순의 회합에서 「관할 관청의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략본부를 만든 의미가 없다.

국민에게 바람직한 전략을 확실히 내세우는 것이 당연한다」고 제언했다. 고이즈미 수상이 「결심한 의견」과 의욕적인 내용을 추구한 추진 계획이지만, 「내용은 약해지는 편」이라는 견해가 커지고 있다.

출처 아사히신문인터넷판

중국 SARS 대책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무료로 공개

중 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의 예방 치료 대책에 관한 특허 데이터베이스가 이번에 완성됐다.

머지않아 중국이 특허를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정부는 중국 지식산업망(www.cnipr.com)을 통해 무료로 공개한다.

국가 지식산업국 관계자에 의하면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특허 정보 9만 3297건이 포함되어 있고, 중국 자체의 특허 정보는 4만 2575건으로 주된 내용은 (1) SARS의 연구·진단·치료 (2) 중국 의학과 한방약에 의한 치료 (3) 유행병·전염병의 예방과 제어 (4) 의료용의 방호·구급 시설 (5) 소독과 폐기물 처리의 5점이다.

동관계자에 의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특허 정보는 주로 폐렴 등 호흡기에 관한 질병의 진단·치료나 의료용 방호 용품의 소독 처리에 관한 것이다.

출처 인민망

지적재산 고등법원의 창설에 반대하는 일본대법원

지재 전문 법원은 세계의 상식

고 도하고 전문적인 기술문제를 판단하는 지적재산전문법원은 세계 각국에 설치되어 있다. 1980년부터 pro-patent 정책에 의해 많은 성과를 낸 미국에서도 82년에 특허법원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을 창설하여 신속하게 특허소송을 재판하고 판례를 통일했다.

지적재산 분쟁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그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지 어떨지의 싸움이다. 늦은 분쟁 해결은 상품과 기업의 생사에 직결된다. 비즈니스 기회를 해하지 않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등법원정도에서의 조기해결이 불가피하다.

CAFC가 미국의 pro-patent 정책을 추진한 최대의 「Engine」이라고 말해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역할을 완수했기 때문이다.

지재전문법원은 영국, 독일, 타이, 한국, 싱가포르 등에도 설치되어 있고 유럽연합(EU)에서도 유럽특허법원의 설립을 결정했다.

중국에서도 특허법원 창설의 움직임이 있다. 일본에서도 지적재산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을 창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 나와 있다. 일본 경단연은 지재건국의 심볼로서 창설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일본의 대기업 약 1000사가 가입하고 있는 일본지적재산협회가 자민당, 내각관방 등에 진정서로서 제출한 서면에는 「지재고등법원의 조기 설치를 열망하고 있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이 요망은 일본 번리사회도 마찬가지이고, 벤처기업도 똑같이 조기 설치를 희망하고 있다.

설립에 반대하는 일본대법원은 세계의 비상식

그런데, 일본 대법원은 거칠게 반대하기 시작했다. 자민당의 정무조사회에 출석한 일본 대법원은 다음의 두가지 점에서 지재고등법원은 필요 없다고 하였다.

첫째, 지재의 항소심은 도쿄고등법원 전속관할이 되고, 5명의 합의제로 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관례통일이 실현된다.

둘째, 기술에 해박한 전문위원을 임명하므로 전문기술성이 높은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더욱이 일본 대법원은 저작권이나 부정경쟁사건 등은 지역 밀착형태가 많기 때문에, 지재고등법원에 전속 관할화하면 지방 거주자에게 항소포기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저작권이나 부정경쟁사건은 특허소송 등과는 소송과정이 다르므로 관할을 둘러싼 혼란이 생기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설립을 저지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 경우 최고재 자신이 낸 자료로 조사해 보면 현행 제도하에서는 저작권으로 4건, 부경법에 이르러 1건 밖에 항소되어 있지 않다. 수건의 가능성을 내세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기가 막힌 이야기이다. 사법제도의 유지인 산업계와 다수의 변리사·대학의 연구자들이 창설을 바라고 있을 때, 서비스 제공자인 일본 대법원이 다양한 이유를 들어 이것에 반대하고 있다. 일본대법원이 든 이유는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실패에 맞춰 제도를 개선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예외적인 문제도 생길지 모르지만, 여러 문제를 개선하면서 요망에 부응해 간다」고 표명하면서 정면으로 임하는 것이 최고재의 본래의 책무다. 지재고등법원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된 고등법원은 필요없다고 하지만, 형태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는 국민의 의식을 명확하

게 할 수 없다. 「사실상의 지재고등법원」은 겉에 나오지 않는 숨은 조직이고, 「지재전국인 일본」이 세계로부터 보여지지 않는다. 지재고등법원의 창설은 일본이 지재 보호를 중시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세계에 나타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그러니까 국민은 바라고 있는 것이다. 유저의 소리를 무시하는 사법은 신뢰할 수 없다.

국민의 총의로 단호히 지재고등법원을 창설하자!

말할 필요도 없이 사법 제도는 이용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법관이나 일부의 법률가나 관료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사법당국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국민의 총의인 입법부에서 창설할 수밖에 없다. 원래, 행정이나 사법에서는 스스로 개혁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추도로 시작된 지재 개혁이다. 이것은 정치의 리더쉽에 의존한다.

지재고등법원의 창설은 일본 사법제도개혁의 발화점이 된다. 전쟁 이후 60년 가까이 법원의 조직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사법조직은 사회변동과 무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도 반드시 지재고등법원을 실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출처 일본경제신문 인터넷판

인도 지적재산권 보호시스템 미흡

인도의 전직 관료인 N. Vittal은 한 강연회에서 인도 정부의 비효율적인 통치 시스템으로 인해서 인도의 국가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정부의 역할 중 하나가 각 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있음에도, 미국의 경우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2개월이 걸리는데 비해서 인도는 6년이 걸린다고 비판하고 있다. 예컨대, Sam Pitroda라는 사업가는 인도에서 공부를 마

미대통령, 모방 의약품 도입 촉진 조치 발표

부 시미대통령이 모방 의약품의 도입 촉진 조치를 발표했다.

가격이 싼 모방 의약품의 도입 촉진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큰 표밭이 되는 고령자간에 관심이 높은 문제이다.

new Britain General 병원에서 고령자들 앞에서 연설한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과제는 인명을 구하는 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가격으로 국내 고령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이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의약품의 특허 보유자가 가지는 모방 의약품의 발매 연기를 제한하는 식품 의약품국(FDA)의 최종 규정인데 이 규정에 의해 미정부는 연간 35억 달러의 의료비를 삭감할 수 있다고 한다.

부시 대통령은 전날에도 의료 문제에 관한 연설을 하여 이라크전쟁을 끝내고 대통령 선거를 향해 국내 문제에 전념할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출처 로이터

치고 미국에 가서 6개의 특허를 획득하여 2500만불의 수익을 올렸다. 그는 인도에 돌아와서 전기 통신 분야의 혁신에 뛰어 들었다. N. Vittal의 견해에 따르면 그가 만일 인도에 계속 있었다면 단 한 개의 특허를 획득할 수 있을 지 의심스럽다고 한다. 사법 시스템과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점은 판결이 매우 느리다는 점이다.

현재 계류중인 사건을 모두 처리하는 데는 3백년이 걸릴 정도로 사법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출처 The Hindu

미국, 스팸메일 방지기술 관련 특허 가출원

미 국인 Philip은 Vanquish라고 불리우는 서비스에 대해서 미국 상표특허청에 가출원 특허를 신청하였다. 동 특허의 내용은 e메일을 보내는 사람이 보내는 한 통 마다 5센트의 보증금을 은행에 예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메일을 받는 사람이 불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메일을 보낸 사람은 5센트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4센트는 수신자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가고, 1센트는 수수료로서 Vanquish에게 간다.

만약 수신자가 메일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발신인이 5센트를 물지 않게 된다. 또한 스팸에 보증금을 붙이지 않은 경우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게 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하루에 69억개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실험적으로 400명에게 Vanquish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성공적으로 스팸메일을 방지할 수 있었으나, 메일을 체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과 같은 문제점이 파악되었다. 미국의 보스턴 외곽에 위치한 Vanquish사는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연말까지는 3천5백만 명의 수요자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한 달에 고객 한 명당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20내지 45센트를 지불하도록 할 예정이다.

출처 Forbes

일본특허청, 대학의 지적보호를 지원

일 본 특허청은 대학이 가진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의 당당자를 위한 지적재산관리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국적 규모로 이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전국 약 200개 대학에 이공계 학부가 있지만 이 중 대책본부의 설치 등 구체적인 대책에 착수하고 있는 대학은 30여개 정도이다.

특허청은 대학에서의 지적재산중시가 경제활동에 있어서 불가피하다고 보고, 측면지원을 강화한다.

관리매뉴얼에는 대학측에 지적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의 유의점을 열거하고 민간과의 공동연구 등에서 얻은 특허에 대해서 출원을 기업에 일임하지 않도록 책임의식을 심어주는 것 이외에 논문과 같이 공개정보로서 관리하는 수법 등도 제시한다. 담당자의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자기진단리스트도 작성한다.

또한 이 매뉴얼을 교재로 세미나를 개최, 참가 대학수를 5-6개 정도로 한정하여 상세하게 지도한다.

특허청은 작년도부터 지재 담당 기업의 OB를 어드바이저로서 10개 대학에 파견하고 있고, 이러한 인재를 세미나의 강사로 초빙하고 대학측의 상담에 응할 예정이다.

출처 일본경제신문 인터넷판

ITX, 휴면특허를 평가·판매

기업의 투자육성을 직접 다루는 ITX는 기업이나 대학이 가지는 지적자산을 다른 기업 등에 라이선스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기업 등이 관리비용 삭감을 목적으로 휴면특허 등을 정리·매각하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응, 그룹기업이 연계하여 특허의 관리로부터 평가, 활용까지를 일관하여 직접 다루는 체제를 정비한다.

ITX는 95%를 출자하여 기술이전이나 지적자

산활용 컨설팅회사인 가칭 IPX를 도쿄에 설립한다.

종업원은 지적재산이나 기술이전 전문가 10명으로 영국에 거점을 설립하고 2005년까지 중국, 미국에도 진출한다. 각국의 특허를 국내외 불문하고 제공하는 구조를 만들 예정이다.

출처 일본경제신문 인터넷판

일본특허청, 실용신안 제도 재검토, 폐지도 포함

일본특허청은 실용신안권의 근본적인 검토에 나선다. 무심사때문에 단기간 등록할 수 있지만 특허권보다 법적 효력이 약하다고 하는 이유 등으로 이용이 급감하여 권리기간의 연장 등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향이지만, 폐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산업구조심의회(경제산업상의 자문기관)에서 11월에 결론을 내고 내년 정기국회에 실용신안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실용신안권은 특허, 의장, 상표의 각 권리와 같은 공업소유권의 하나로서 보호대상은 특허권과 큰 차이는 없지만, 출원으로부터 6개월에 등록할 수 있고 권리기간이 6년으로 특허권(20년)보다 짧은 것이 특징이다.

완구 등 모방되기 쉽고, 수명이 짧은 상품에 적합한데 1994년에 무심사등록제로 전환했더니, 2002년의 출원건수는 94년의 거의 반인 8,600건으로 감소하였으며 무심사로는 공신력이 부족하다고 보여진 것 이외에, 금지청구 등의 권리행사 시에는 재차 기술평가서가 필요한 점 등, 사용하기에 어려운 점으로 인하여 경원시 되어왔다.

출처 일본경제신문 인터넷판

부정 사용 도메인네임을 삭제: 북경 법원이 강제 집행

북 경시 제일 중급 인민 법원은 重慶康明斯 工程機械公司에 대해 강제 집행을 실시해, 동공사의 도메인네임을 삭제했다.

Cummins의 정식 명칭은 「Cummins Engine Company, Inc.」. 동사가 중국에서 도메인네임 「cummins」를 등록하려 했더니, 重慶康明斯가 1998년에 벌써 「cummins.com.cn」의 도메인네임을 등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Cummins는 康明斯사가 도메인네임 「cummins.com.cn」를 악의로 등록해,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켜, 동사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부정 경쟁행위가 해당된다고 해, 북경시 제일 중급 인민 법원에 제소했다. 康明斯사에 즉시 도메인네임의 사용을 중지하고, 등록을 삭제하도록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고 康明斯사는 이에 불복하여 북경시 고급 인민 법원에 상소했지만, 2심 판결은 1심 판결을 지지하였다. 판결 확정 후에도 康明斯사가 도메인네임을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Cummins는 북경시 제일 중급 인민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동법원은 강제 집행의 실시를 결정해 직원이 中國科學院計算機網絡情報센터에 강제 집행 통지서를 제시해 삭제를 의뢰. 이렇게 해서 「cummins.com.cn」의 도메인네임을 삭제했다.

출처 인민망

미국, 개도국에 있어서 특허 의약품에 대해 양보하다

U STR의 Rober Zoellick 무역대표는 이집트에서 열린 글로벌 무역 회담에 관한 비공식 WTO 회의 참석 중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여기에서 공중보건과 TRIPS 협정간의 관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혔다. Zoellick 대사의 기자회견 요지는 “미국은 개발도상국에 수출하기 위한 의약 특허품의 강제실시권이 구체적인 질병 목록에 포함된 특허에 제한되어야만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났다.”는 것이다. 이를 보도한 Dow Jones Newswires는 이러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중요한 양보(crucial concession)”라고 불렀다.

다음은 기자회견 중 공중보건과 의약품에 관한 부분의 요약이다.

Zoellick 대표 : ... TRIPS와 의약품 문제에 관하여, 지난주에 신속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미국, 유럽 등을 포함한 전세계의 제약회사 대표들과 회담을 가졌다. 동 회담에서 제약회사들은 2003. 9. 10-9. 14 멕시코 Cancun에서 열리는 제5차 WTO 각료회의 전까지 동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제약회사들은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의견차이와 우려를 좁혔으며, 이는 건설적인 노력인 것이다. 이제 제한된 소수의 국가들로부터 강제실시권을 행사하여 제조된 의약품이 사업적으로 수출될 수 있는 위험성과 동 의약품이 다른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diversion)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강제실시권 남용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이며, 동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최적으로 해결하는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 문제는 더 이상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관한 것이 아니라(less access to medicines) 신뢰구축의 문제(more one of building trust)인 것이다.

Washington Trade Daily 질문 : 그럼 미국이 작년 12월 20일에 TRIPS에 관하여 제기한 반대로부터 공식적으로 물러난 것, 즉 미국은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질병의 범위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Zoellick 대표의 답변 : ... 현재 도하의 정의보다 상업적 수출 가능성에 대한 문제와 역류 방지(anti-diversion)의 문제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다.

출처 ipo daily news / USTR press release

중국, DVD에 이어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라이선스료가 문제가 되다

「中國青年報」은 디지털카메라에 있어 일본 기업이 중국 기업에 대해서 고액의 라이선스료 지불 요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DVD 플레이어에서 문제가 된 것과 같은 형태인데, DVD 플레이어에서는 중국 기업이 30億元의 라이선스료 지불이 확정되어 있다.

중국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聯想集團은 산하 홍보회사를 통해서 현재 동사가 그러한 라이선스료 지불의 정식 통지를 받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부지식산업 사무센터의 楊林村부주임은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라고 말하며 경계를 호소하고 있다.

이 보도에서 일본측이 이러한 특허 라이선스

문제를 꺼내는 것은 중국의 디지털 카메라 시장의 급성장이 배경에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중국의 디지털 카메라 시장은 2003년에 판매 대수 100만대를 돌파하여 50%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일본측이 라이선스료를 요구한다면 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디지털 카메라의 대부분의 핵심기술은 일본이나 미국 등의 기업이 장악하고 있어, 지적 재산권은 벌써 해외 기업이 중국 시장에 참가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 라이선스료를 지불하게 되면 중국 메이커가 원래 가지고 있던 비용상의 우위를 상실하여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聯想에서는 라이선스료를 지불하게 되어도, 경영이나 생산 효율을 높여 자신의 우위성을 유지하여, 소비자에게 가격에 알맞은 최선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계속 제공하고, 동시에 聯想 독자적인 지적 재산권 전략도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고 있다.

聯想은 벌써 자사의 디지털 카메라에 관한 독립한 연구 개발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도 중국 메이커와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싶다고 하고 있다.

출처 중국정보국

KIPA 게시판

제1회 지식재산권 연구 포럼

2003 제1회 지식재산권 연구 포럼이 6월 27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주최로 치뤄진 이번 행사는 윤권순 수석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주덕인 연구센터 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국민대 박정원 교수가 북한의 '산업재산권' 제도 분석이라는 제1 주제 발표를 하였다.

제2주제 발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최현규 선임연구원이 북한의

특허정보 동향분석을 발표하였으며, 제3주제 발표는 특허청 국제협력과 남영택 사무관이 남북간 산업재산권분야 교류협력방안을 발표하였다.